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2월 1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 헌 재

○대통령령 제1870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
한법」”으로,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

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
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
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폐기
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
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
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에 관한 법률」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시행
령”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
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
거래법」”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5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
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
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
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

제15924호

판

보

2005. 2. 19. (토요일)

휴양업을 말한다.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6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제22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해양오염방

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3조제1항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2004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
한다.

제27조의4제4항중 “창업한 기업으로서 제6조제4항제1호”를 “신규로 사
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제4항제1호”로, “개시일”을 “사업개
시일”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
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
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
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
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51조의2의 제목중 “부동산투자회사”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부동산투자회사”를 각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제60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제60조의2제1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
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63조제4항중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을 “법 제66
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으로,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농지가”를 “농지·초
지 또는 부동산이”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중 “제66조제1항”을 “제66
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중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제81조의4제1항중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를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을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82조의3을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복권당첨소득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92조제1호에

○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을 말한다.

②법 제9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을 말한다.

제10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4조의2를 제104조로 하며,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위탁운송비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라 함은 화물의 위탁운송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운임 및 수수료료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사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

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5제5항 후단중 “연 100만원”을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6 내지 제10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3.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4. 공연단체
5. 공연관련 산업
6.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7.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②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이라 함은 각각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및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문화사업준비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의 잔액부터 상계하되, 각 사업연도별로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투자금액과 상계한다.

④법 제104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⑤법 제104조의9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당해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를 포함한다)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

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 다.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 라.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법 제104조의10 제1항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했던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순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운항일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한다. 다만, 정비·개량·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다.

-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했던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④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사용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했던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 비율

⑤법 제104조의10제8항의 규정에 의한 1톤당 1운항일이익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 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례적용대상기간과 그 다음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한다.

⑧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

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⑩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04조의9(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중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로 하고, 동조제7항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5항중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사

제106조의3제1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일”을 “10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각각 “거래추천 또는 수입

추천”으로, “20일”을 “10일”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20일”을 “10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의4제5항중 “제4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금세공업자등(제106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다)”을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으로, “20일”을 “10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중전의 제8항)중 “날의 20일전까지”를 “달의 전달 10일까지”로 한다.

⑦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

- 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 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 4.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1조의2·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세금지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1. 면세금지금추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한 경우

-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06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6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6조의7 및 제10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

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 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납부현황 및 거래규모·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text{납세담보금액} = \text{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times \text{기준가격} \times 11/100 \times 120/100(\text{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 110/100)$$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

금의 공급절차·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6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제116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은”을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중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4항중 “수출자유지역”을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으로 하고, 동조제8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및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를 “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각각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16항 내지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⑬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

화 1천만불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 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 ⑱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

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제116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장의3(제116조의21 내지 제116조의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

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

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
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정
-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2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
업일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
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말한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2
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
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
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2.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3.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
- ⑤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동조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 ⑥법 제12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

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⑦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법 제122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1. 일반과세자

- 가.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 100분의 21
- 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14
- 다. 광업 : 100분의 7
- 라. 제조업 : 100분의 20
- 마. 도매업 : 100분의 18
- 바. 소매업 : 100분의 15
- 사. 건설업 : 100분의 23
- 아. 음식업 : 100분의 46
- 자. 숙박업 : 100분의 45

차.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4

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5

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2

파.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100분의 47

하.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2

2. 간이과세자

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

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⑨법 제122조의2제9항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⑩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⑪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⑫법 제122조의2제9항제6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⑬법 제122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제5항제2호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중전의 제6호)중 “제5호”를 “제7호”로 한다.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제121조의3제8항제2호 후단중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를 “1

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로 한다.
제124조제3항중 “법 제130조제2항”을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제129조제1항제2호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항공운송업”을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분할하거나 증자·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15호의2중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하고, 동항제26호를 제27호로 하며, 동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⑨법 제135조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⑩법 제1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제1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4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각각 “「기술개발촉

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실용신안법”을 “「실용신안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각각 “「기술이전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항 후단 및 동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

원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 본문 및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각각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 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동조제6항제4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2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중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중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6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원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으로,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제1호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법”을 “「한국전력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한국공항공사법”을 “「한국공항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한국가스공사법”을 “「한국가스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1호중 “한국철도공사법”을 “「한국철도공사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후단 및 동조제3항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 전단 및 후단, 동조제7항 본문 및 단서, 동조제8항 전단 및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1호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산식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노동

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 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후단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항 및 동조제9항 내지 제11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1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

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항 전단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3호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산식외의 부분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및 제7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12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13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3조의2제4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전단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중 “증권투자회사법”을 각각 “「증권투자회사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법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 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제4항제2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하며, 동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

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 산식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중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

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토지수용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제1호중 “토지수용법”을 “「토지수용법」”으로 한다.

제79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가목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증권투자신탁업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다목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마목중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다목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마목중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조의3제1항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군인공제회법”을 “「군인공제회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을 “「대한교원공제회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경찰공제회법”을 “「경찰공제회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대한소방공제회법”을 “「대한소방공제회법」”으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제1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 및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 단서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2조의5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

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3조의2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7조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제2호 본문 및 동조제5항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3항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04조의4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05조제19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건설사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각각 “「건설사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을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법시행령”을 각각 “「주택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7항제1호중 “별정우체국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을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인삼산업법”을 “「인삼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

력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한국국제협력단법”을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한국조폐공사법”을 “「한국조폐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9호중 “공무원연급법”을 “「공무원연급법」”으로 하며, 동항제20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1호 및 제22호중 “지방공기업법”을 각각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3호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4호중 “한국해운조합법”을 “「한국해운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25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하며, 동항제27호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하고, 동항제28호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32호중 “집행관법”을 “「집행관법」”으로 하고, 동항제33호중 “공증인법”을 “「공증인법」”으로 하며, 동항제35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항제36호의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하며, 동항제37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8호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9호중 “항만공사법”을 “「항만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 단서중 “부가가치세

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12항 각호외의 부분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동조제14항 각호외의 부분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6항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가목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

제8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14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및 제3항(중전의 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각각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중 “군인사법”을 “「군인사법」”으로, “군무원인사법”을 “「군무원인사법」”으로,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군인사법”을 “「군인사법」”으로,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주세법시행령”을 “「주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4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

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
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
고, 동조제8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0항중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
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중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각각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가목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항만법”을 “「항만법」”
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6항 각
호외의 부분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

로 하며, 동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
한법률”을 각각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1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령」”으로 하며, 동조제1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동항제1호·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
다.

제116조의4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
자촉진법」”으로 하고,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8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
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외국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
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2제1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
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중 “생명공학육성법”을 “「생명공학육성법」”으
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
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중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삭도·궤도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6제1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각각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을 “「토지수용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0중 “국제선박등록법”을 “「국제선박등록법」”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 본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및 동조제7항제1호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을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종합유선방송법”을 “「종합유선방송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3항제5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부가가치

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2조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2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제6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의3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8호 및 제18호의2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0호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3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동항제24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5호중 “선박투자회사법”을 “「선박투자회사법」”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제1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용란 나목①에 ㉠ 내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 나목①에 ㉠ 내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4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4제8항제2호 및 제106조의6 내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16조의2제8항·제17항 및 제18항, 제116조의21 내지 제116조의2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 또는 수입신고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취득·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허가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

정은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례) 이 영 중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첨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위탁운송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제

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제출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 제12항, 제106조의4제2항·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이 영 시행후 신규로 승인을 얻은 자가 2005년 3월에 해당하는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을 기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금세공업자등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등에 대한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승인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2항의 개정

제15924호 관 부 2005. 2. 19. (토요일)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1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주총회·사원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22

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관련)

1. 「수도권신공향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 18.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 거래시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운기업의 요건 및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세 지원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창업요건 완화(영 제5조제9항 내지 제11항)

-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범위를 확정하여 줄 필요성이 있음.
- (2)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총 창업가액의 30퍼센트 이하로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 (3)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창업을 하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영 제10조제3항제6호)

- (1) 반도체 설계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의 범위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 (3)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분야에 대한 투자 등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1년 연장(영 제23조제1항)
- (1)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2) 광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

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투자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영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5년간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2년간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임원도 50

퍼센트 이상 이전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이전대상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의 이사 등으로 규정하고 이전한 임원이 총임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3) 법인의 이사 등 핵심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 수도권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영 제79조의2 및 별표 7 신설)

(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 취득일이 공

익사업의 예정지구·지역 등을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투
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기
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준시
가로 과세되는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사업준비금 손급산입제도의 적용대상 규정(영 제104조
의6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손실보전 및 투자의 목적으
로 계상된 문화사업준비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계산에서 공
제되는 손급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
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급산입할 수 있는 문화사업의 범위
를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등
으로 정함.

(3)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등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고 문화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규정(영 제104조
의7 및 제104조의8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에 있어서 일반법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대상기
업은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 미만으로 용
선한 외국선박이 당해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하고,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
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해운기업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해지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
므로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조정(영
제106조제7항제40호 신설)

(1) 건설경기를 안정시키고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도로 건설·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한국도로공사와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도로를 건설한 경우 그 사업시행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보아 통행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이용자가 부담하는 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도로 건설·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면세금지금 거래를 위한 납세담보제공 대상사업자의 범위 규정(영 제106조의6)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거래시 일정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채납 및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

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지금 거래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3) 납세담보제공 대상사업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허용 확대(영 제124조제4항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투자세액의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로 정함.

(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